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. 6. 13 선고 2019가단8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
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4. 4. 30. 접수 제134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채승원

별지